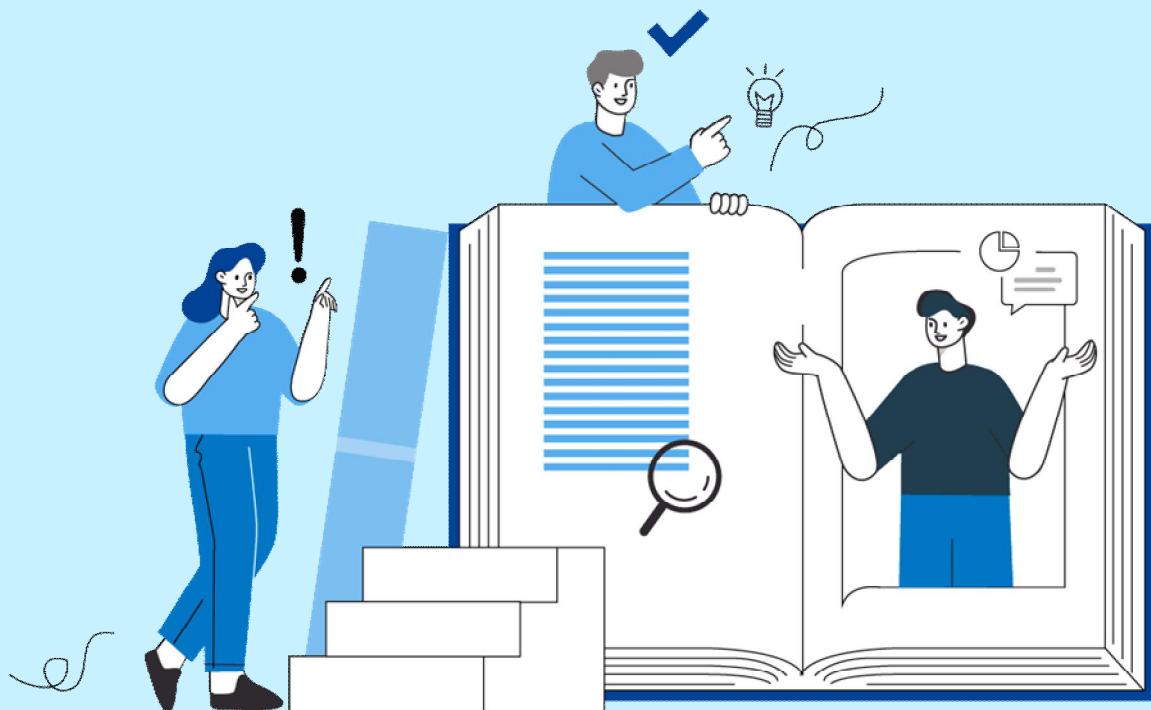


판매일자: 2023.04.01.

무배당

# KDB win-win기업플랜보장보험 신산업재해장해특약



 산업은행계열 KDB생명

본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 목차

---

<b>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b>	4
제1조 (목적)	4
제2조 (용어의 정의)	4
 <b>제2관 보험금의 지급</b>	5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5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5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6
제6조 (보험금 등의 청구)	7
제7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7
제8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8
 <b>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b>	8
제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8
제1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8
 <b>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b>	10
제1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0
제12조 (피보험자의 범위)	11
제13조 (특약의 보험기간)	11
제14조 (특약의 무효)	11
제15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11
 <b>제5관 보험료의 납입</b>	12
제16조 (특약의 보장개시)	12
제17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13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13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4
 <b>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b>	14
제2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14
제21조 (해약환급금)	14
 <b>제7관 기타사항</b>	15
제2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5

---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6
(부표 2) 장해등급분류표	17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7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관련)	24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특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특약: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장해: “장해등급 분류표”(부표2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나.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다.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 라.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특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고위험 취미(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를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단리와 복리】

이자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눕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text{원} + (100\text{원} \times 10\%) + (100\text{원} \times 10\%) = 120\text{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	--------	--------

복리계산법:  $100\text{원} + (100\text{원} \times 10\%) + [100\text{원} + (100\text{원} \times 10\%)] \times 10\% = 121\text{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	--------	--------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www.kdblifco.kr](http://www.kdblif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5. 기타 용어의 정의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이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로 “장해등급 분류표”(부표2 참조) 중 제1급 내지 제1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산재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 ④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업무상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결정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⑤ 제4항에 규정한 산재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업무상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산재장해급여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산재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산재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산재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 ⑥ 제4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한 장해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산재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산재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산재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⑧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⑨ 이 특약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제6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산업재해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7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3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율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 ⑤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 제8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 제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 제1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특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특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의】**

자기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

**【과실】**

어떤 결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

**【중대한 과실】**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음식 배달하는 직업을 가진 A 고객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직업 및 운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다.

###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제1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별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 3.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③ 제2항 제3호의 경우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④ 제3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6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 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⑤ 제2항 제3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제1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 제13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 제14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 제15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다만,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④ 피보험자가 퇴직,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피보험단체로부터 탈퇴한 경우에 계약자는 자체 없이 피보험자의 탈퇴 년 월 일 및 사유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피보험자가 퇴직의 사유에 의하여 피보험단체로부터 탈퇴한 경우에 이 특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후에는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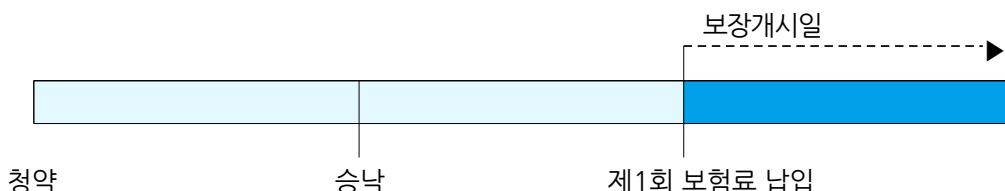
### 제16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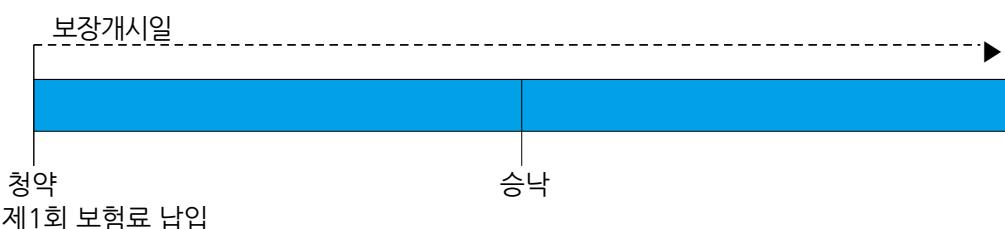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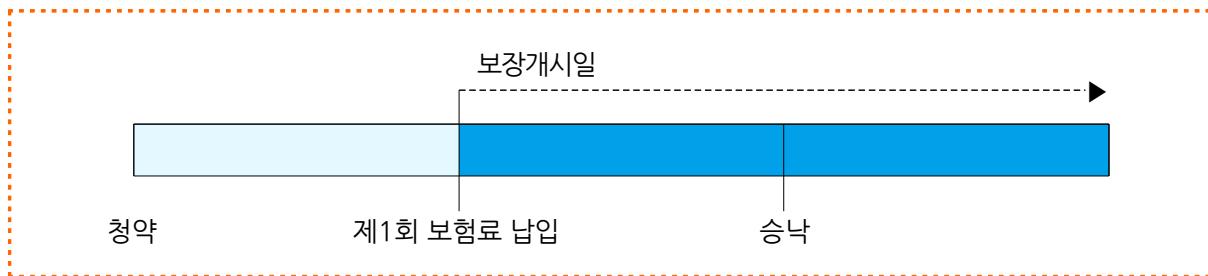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 제17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 ③ 제2항의 경우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 ④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 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⑤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6조(특약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 제2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1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격립액,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3 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7관 기타사항

---

### 제2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0지 급 금 액
		1 급 1000만원
		2 급 900만원
		3 급 800만원
		4 급 700만원
		5 급 600만원
산재장해급여금 (제3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 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1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6 급 500만원 7 급 450만원 8 급 400만원 9 급 350만원 10 급 300만원 11 급 250만원 12 급 200만원 13 급 150만원 14 급 100만원

(주) 1. 다음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별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때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부표 2)

## 장해등급 분류표

등급	신 체 장 해
제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 눈이 실명된 사람</li> <li>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li> <li>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li> <li>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li> <li>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9.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li> </ul>
제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li> <li>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li> <li>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li> <li>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li> </ul>
제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li> <li>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li> <li>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li> <li>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li> <li>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li> <li>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li> </ul>
제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li> <li>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li> <li>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li> <li>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7.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ul>

등급	신체장애
제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li> <li>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li> <li>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li> <li>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li> </ul>
제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li> <li>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li> <li>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li>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li>5. 척추에 극도의 기능장애나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li> <li>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li> </ul>
제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li> <li>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li>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li>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li> <li>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li> <li>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li> <li>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8.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li> <li>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li> <li>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ul>

등급	신체장애
제7급	<p>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p> <p>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p> <p>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p> <p>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p>
제8급	<p>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p> <p>2. 척추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동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p> <p>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p> <p>6. 한쪽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7. 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p> <p>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p> <p>10.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p> <p>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p>
제9급	<p>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p> <p>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p> <p>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p> <p>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p> <p>5. 코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p> <p>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p> <p>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p> <p>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p> <p>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등급	신 체 장 해
제9급	<p>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p> <p>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p> <p>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p> <p>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애나 극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나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p> <p>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p> <p>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p>
제10급	<p>1. 한쪽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p> <p>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p> <p>3. 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p> <p>4.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p> <p>5.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p> <p>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나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p> <p>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p> <p>11.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p> <p>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p> <p>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p> <p>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p>
제11급	<p>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p> <p>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p> <p>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p> <p>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6. 두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p>

등급	신체장애
제11급	<p>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나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p> <p>8.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9.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p> <p>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p> <p>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p> <p>12.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p> <p>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p> <p>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p> <p>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p> <p>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 ·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p>
제12급	<p>1.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p> <p>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p> <p>3.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p> <p>4.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p> <p>5. 한쪽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p> <p>6.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p> <p>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p> <p>8.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p> <p>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p> <p>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p> <p>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p> <p>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p> <p>13.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p> <p>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p> <p>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p> <p>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p> <p>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p> <p>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p>

등급	신체장애
제1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li> <li>2.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li> <li>3. 한쪽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li> <li>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li> <li>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li> <li>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li> <li>7.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li> <li>8.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펴다 할 수 없게 된 사람</li> <li>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li> <li>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li> <li>11.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li> <li>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li> <li>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li> <li>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li> <li>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li> <li>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li> </ol>
제14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li>2. 한쪽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li> <li>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li> <li>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li> <li>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li> <li>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li> <li>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li> <li>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പ디다 펴다 할 수 없게 된 사람</li> <li>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li> <li>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li> <li>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li> </ol>

< 참고 >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

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부표 3)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7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적 립 이 율
산재장해급여금 (제3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제21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